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과 제4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의 직급별난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